

3. 신기술 내용

- 본 기술은 지진이나 태풍 등의 자연재해 또는 기타 노후화나 부적절한 유지관리로 인하여 붕괴 또는 붕괴가 예상되는 교량에 복수개의 상용형강을 이음판과 고장력볼트로 조합하여 폐단면의 구조를 만들고 거더 단부에 충전콘크리트와 긴장재를 배치하여 프리스트레스 합성형 강교량을 구성함으로써 자재수급이 원활하고, 재료 품질의 신뢰성이 보장되며, 판형과정이 생략됨으로 인하여 급속시공이 가능함과 동시에 지간대비 형고가 낮아 여유고 확보에 유리한 급속시공이 가능한 교량형식

4. 신기술 범위

- 압연 형강과 상하부 이음판을 고장력 볼트로 결합하여 폐단면 구조로 만들어 부재의 효율적 사용과 용접을 최소화하도록 한 구조형식
- 거더 단부에 콘크리트를 충전하고 긴장재를 배치하여 프리스트레스를 가함으로 지점부의 전단보강 및 집중하중의 분산, 긴장재의 앵커부 하중의 분산효과를 가지도록 하며, 긴장력을 통한 압축력과 부모멘트에 의해 부재의 효율성이 증가되는 구조형식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5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공고제2020-664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 등재된 화학물질의 상세정보 제공을 위한 고시 제정 근거 마련과 관련하여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0847호, 2020. 7. 14. 공포)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일몰이 설정된 규제에 대한 정비 결과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wldud@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2, 전자우편 wldud@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972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작성되는 토지현황조사서와 지상경계점등록부는 조사·등록내용이 복잡하고,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어 조사·등록내용을 간소화 하고, 최신기술(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으로 위치도를 작성하여 시각화하는 등 사업의 시행 전·후가 비교 되도록 조사·등록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상경계점등록부 등록사항 변경(안 제10조제1항 등)

지상경계와 관계없는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 경계점 위치사진과 지적공부인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내용과 중복되는 경계점좌표 등을 경계점 등록기준, 형태, 위치 등으로 변경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을 변경

나. 토지현황조사서 서식 변경(별지 제3호 서식)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토지현황조사서를 사전조사서와 현지조사서로 구분되도록 서식 변경

2. 의견제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9월 1일 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 (담당주무관 : 박일웅, 전화 : 044-201-4660, 팩스 044-201-5678)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우 30103)